

부속서 I

주 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11.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2.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2.2조(내국민 대우)

나. 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2.3조(최혜국 대우)

다. 제12.5조(현지주재)

라. 제11.8조(이행요건)

마. 제11.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2.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11.12조제1항가호 및 제12.6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¹⁾**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²⁾**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

1)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11.12조제1항 및 제12.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11.12조제1항가호 및 제12.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1.12조제1항다호 및 제12.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2.2조(내국민 대우)·제12.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2.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8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12.5조)와 내국민 대우(제12.2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12.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12.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